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인간과 가까운 존재로서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현행 민법은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면서, ‘동물’도 ‘물건’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법체계로 인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배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임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보더라도 여전히 권리의 객체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개정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향후 동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반려동물 상해 시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용이나 위자료 인정이 수월해지는 등 해석을 통한 변화나, 생명을 가진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법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입법론이 선언적인 데 그치고 실효성이 없다가, 동물이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동물 관련 분쟁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므로 향후 경과는 두고 볼 필요가 있음
-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은 동물소유자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에서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보험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 예컨대 동물이 물건과 차별화되는 생명체로 인정되면, 교통사고로 동물을 살상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하는 사법 영역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보험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보험 분야에서도 관련된 사회적 논의 전개와 세부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올해 1월에는 동물보험을 현재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섭시키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됨
 - 민법 개정안과 같이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동물이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물보험을 상법상 인보험인 제3보험에 포섭하는 것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1. 서론

- 지난 7월 19일, 법무부는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¹⁾
 -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생명체 보호·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에 대해, 물건이 아닌 동물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임
 - 본 입법예고안은 올해 2월 발족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²⁾에서 만장일치로 제안됨

〈표 1〉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현행	개정안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1. 7.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한편 올해 1월에는 동물보험을 현재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을 보장하는 제3보험에 포섭시키자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음³⁾
 -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보유가구 급증으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음
-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반려동물 문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동물과 관련된 논의도 다양해지고 있음
 - 동물보호법이 1990년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며 일정 범위의 동물⁴⁾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법영역에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으나, 동물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관련된 법률적 논의는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非物件化)를 중심으로 한 입법론의 주요 내용과, 이러한 논의가 보험업에 갖는 함의에 관해 살펴보기로 함

1) 입법예고 기간은 2021. 8. 30까지임

2) 법무부가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임

3) 2021. 1. 19.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7475)(20대 국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의안번호 2024280)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4)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제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함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2.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非物件化)를 위한 입법론

- 현행 민법은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⁵⁾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바, ‘동물’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⁶⁾으로서 ‘물건’에 해당됨
 -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하에서 형법상으로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로 평가되며, 동물의 상해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시장의 교환가격이 기준이 됨
 -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상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사회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 예컨대, 반려동물이 사고나 고의로 상해를 입는 경우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훨씬 초과하더라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양육자는 기꺼이 치료비를 지불하려 할 것이나, 가해자로부터 이를 모두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음⁷⁾
- 해외에서도 동물을 권리의 객체인 물건 내지 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국가에서 민법상 동물이 물건과는 다른 존재임을 규정⁸⁾함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프랑스는 ‘동물은 감성을 지닌 생명체이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물건 내지 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유보하고 있음⁹⁾
 - 유보조항으로 인해 동물은 단지 ‘살아있는 물건’일 뿐 여전히 대개의 경우 물건과 같은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회의적 견해¹⁰⁾¹¹⁾도 제기됨
 -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쟁점, 예컨대 손해배상액 산정, 동물의 양육권, 동물 매매계약 관련 분쟁 시 생명을 지닌 동물과 양육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는 견해도 있음¹²⁾
 - 아울러 동물의 치료비용이 동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거나,¹³⁾ 동물의 소유권을 행사할 때 동물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¹⁴⁾하기도 함¹⁵⁾

5) 민법 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일정한 설립절차를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함(제33조)

6)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7) 다만, 하급심에서 애완견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애완견과 소유자 사이의 정신적 유대와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손해로서 교환가치를 넘어선 치료비와 위자료 손해를 인정한 예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단414531 판결)

8) 오스트리아 민법 제285a조(1988), 독일민법 제90a조(1990), 스위스민법 제641a조(2003), 프랑스민법 제515-14조(2015)

9) 윤철홍(2012),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pp. 264~267; 오승규(2015),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p. 14

10) 한민지(2021),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pp. 354~355

11) 법무부(2004),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pp. 131~132

12) 권용수·이진홍(2021), 「민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예비적 고찰」, 『법조』, 제70권, 제2호, p. 120

13)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14) 독일

15) 윤철홍(2011), 「독일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pp. 15~16; 윤철홍(2012), pp. 272~274; 한민지(2021), p. 356

○ 국내에서는 1999년경 및 2012년경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각 동물의 비물건화가 논의된 바 있음

- 1999년에는 소위원회에서 독일 민법을 참고한 동물의 비물건화가 논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종래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던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며 단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개정 필요로 판단됨¹⁶⁾
- 2012년에는 제2분과위원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 개정이 긍정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동물의 비물건성 외에 손해배상, 압류금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시안이 마련되는 진전을 보임¹⁷⁾
 - (동물의 비물건성) (i)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ii)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과 함께 (iii)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안 제98조의2)
 - (소유권의 권능)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권 행사 시 동물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11조 제2항)
 - (손해배상)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 비영리목적으로 소유한 동물의 상해 시, 신의칙상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교환 가치를 초과한 치료비용의 배상책임 및 동물의 보유자 등에 대한 위자료책임을 규정함(안 제752조의2)
 - (압류금지) 반려동물이나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동물의 압류를 금지함(민사집행법(안) 제195조)
- 이후 경과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위 개정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됨¹⁸⁾

○ 이후 2017년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¹⁹⁾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 동물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영업상 사육하는 동물, 야생짐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동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물건성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제기됨²⁰⁾
 -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이 법적·일상적 현실인 바, 동물 중에는 물건성을 보유하거나 유지시켜야 할 동물이 있으므로 물건에서 제외되는 동물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²¹⁾
- 또한,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한다고 사람과 같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 이후 생명을 가진 동물을 물건과 달리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소유주의 권리행사나 의무가 어떻게 제한되고 부담되는 것인지 별도의 논의와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됨²²⁾

○ 본건 입법예고안은 해외 입법례나 2017년 의원발의안과 유사하게 모든 동물의 비물건성을 선언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음

- 사공일가 TF 논의 시에는 압류 대상에서 최소한 반려동물은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²³⁾되었으며, 법무부는 동물을

16) 법무부(2004), pp. 131~132

17) 윤철홍(2012), pp. 262~278

18) 윤철홍(2014), 「애완견의 사망 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와 배상범위-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법조』, 63권, 1호, p. 260, 주28 각 참조함

19) 2017. 3. 21.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6313)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제6313호) 검토보고서」, pp. 8~9

21)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은 ‘개정안의 취지는 생명체인 동물을 무생물체인 물건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모든 동물을 포함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취지였음

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제6313호) 검토보고서」, pp. 9~10

살상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방안도 논의 중²⁴⁾이라 하나, 입법예고안에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

○ 동물의 비물건화에 따른 구체적 효과를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임

- 동물의 비물건화에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동물이 재산가치를 갖고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동물 관련 분쟁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해 보임
 - 예컨대,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용이나 위자료 배상, 압류금지 등 동물과 관련된 민법적 쟁점은 인간과 정서적 교류를 맺는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나, 입법예고안은 동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동물은 식용 기타 영리목적으로 사육되는 가축이나, 실험동물, 사역동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바, 경제적·기능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육하는 동물의 이용과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들
- 반면,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민법은 재산관계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으로, 향후 동물과 관련된 분쟁에서 해석을 통해 여러 쟁점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물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상충되는 기존의 동물 관련 법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²⁵⁾
 - 예컨대, 법원에서 반려동물 살상 시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치료비용이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지고, 이혼이나 상속 시 동물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재산의 분할'이 아닌 '적절한 양육자'가 누구인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법리가 축적되면 입법으로 이어지기도 용이할 것임

○ 동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뿐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이나 가축에 대해서도 생명체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날로 제고되고 있음

- 동물의 비물건화 및 그에 수반하는 민법 개정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논의될 사항이라 사료됨
- 생명체 존중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경제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동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장기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관리책임, 동물의 경제적 활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23) 법무부 보도자료(2021. 4. 15), “법무부,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개최-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p. 2

24) 법률신문(2021. 7. 1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독자적 법적지위 인정”(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588&kind=&key=%EB%B2%95%EB%A5%A0%EB%A7%8C%ED%8F%89)

25) 법무부 보도자료(2021. 7. 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p. 2



3.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가. 동물보험의 제3보험 포섭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 본건 보험업법 개정안은 ‘동물보험’을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제3보험’으로 포섭하자는 것임
 - 동물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에 속하며 보험업법상으로도 손해보험 상품으로 분류 및 판매²⁶⁾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물은 우리 법체계상 물건 내지 재물로 분류되기 때문임
 - 개정 취지에는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이유로 하였으나, 반려동물보험을 인간의 질병·상해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일반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됨
 - 생명을 가진 반려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상해를 경험하며, 반려동물 주인의 치료비 부담 등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국내에선 아직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²⁷⁾
- 제3보험 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말함(보험업법 제2조 제5호)
 - 상법은 보험을 보험목적과 보상방식에 따라 인(人)보험(정액, 비정액)과 손해보험(비정액)으로 구분하는데,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 단위를 고려하여 인보험 대신에 생명보험과 제3보험으로 분류함²⁸⁾
 - 제3보험은 사람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생명보험에 가깝지만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치료비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둘 중 어느 한 보험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보험임
 - 보험업법은 이에 제3보험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생명보험 회사 및 손해보험회사가 제3보험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 동물이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질병, 상해 등의 보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동물보험을 인보험인 제3보험에 포섭하는 보험업법 개정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는 우리 현행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법 적용상 혼란이 우려됨
 - 앞서 본 입법예고안대로 동물의 비물건화가 이루어지더라도 동물은 여전히 인간과 구별되는 권리의 객체로서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손해보험에 속함은 변함이 없음
 - 장래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에서 특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보다 인간과 가까워지는 경우 상법 보험편에도 영

26)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별표1을 참조함

27) 김세중·김석영(2017),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KIRI 리포트』

28) 한기정(2019), 『보험업법』, 박영사, pp. 40~42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시점에서 관련된 논의나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가축 등 영리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폐사 시 교환가치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모든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포섭하는 것은 제안 취지에도 맞지 않음
- 법안의 취지가 질병·상해보험과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생명보험회사에 동물보험업 영위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생·손보 간 겸영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제10조)에 예외를 규정하는 등 기존의 법률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

나.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가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진행 중인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 자체는 동물보험의 상법적 분류나 기타 보험법 관련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법(私法)체계의 변화는 보험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은 동물소유자 뿐 아니라 개개인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에서 갖는 권리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됨
 - 예컨대, 동물이 물건과 차별화되는 생명체로 인정되면, 교통사고로 동물을 살상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동물에 대한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채권이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보험은 현대인이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노출된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켜야 하는 사법 영역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보험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음
 - 아직 보험법 영역에서 동물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민법 영역에서의 사회적 논의 전개 및 세부 이슈, 관련 법제도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보험 분야에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